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사업내용	-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정책사업 추진과 민·관·학 협업을 통한 영등포 교육의 플랫폼 역할 수행
출연금의 범위	- 기본재산 적립 - 운영비 - 인재육성 장학금 - 미래교육지구사업 - 과학인재양성사업(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
출연금액	1,154,027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본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기존의 영등포구 장학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목적사업에 인재양성 사업을 추가하고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영등포구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음.
 -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과학인재 양성, 평생학습 지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까지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행하게 될 예정이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 265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나.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다. 사업내용

- 1)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 2)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정책사업 추진과 민·관·학 협업을 통한 영등포 교육의 플랫폼 역할 수행

라. 출연 필요성

- 1) 2015년 4월 구 출연금(5억)으로 설립된 재단은 기부금 수입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2023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여 기존 미래교육과의 사업을 미래교육재단에서 이관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비를 출연받아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1) 범 위: 기본재산 적립, 운영비, 인재육성장학금, 미래교육지구 사업, 과학인재양성사업(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
- 2) 출연금액: 1,154,027천원

※ 2024년도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